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
----------	-----

제출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균형발전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역균형발전계획 및 주요 균형발전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안 제11조)
-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등으로 함(안 제12조 제1항)
-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및 사업비의 보조 등으로 함(안 제12조제2항)
- 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18. 9. 13. ~ 9. 17.)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이 수립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4.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보조금, 수입금 등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비 지원

4. 지방채 및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3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이 수립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p>
<p>&lt;신 설&gt;</p>	<p>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li> <li>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li> <li>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li> <li>4.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li> <li>5. 그 밖의 보조금, 수입금 등</li> </ol> <p>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li> <li>2.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li> <li>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비 지원</li> <li>4. 지방채 및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li> <li>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li> </ol>
<p>&lt;신 설&gt;</p>	<p>제13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p>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기획담당관 정숙영 주무관(2133-6648)